

민주당의 한·미 FTA 재재협상안 (10+2) 에 대한 정부 입장

2011.7월

관 계 부 처 합 동

【안내말씀】

이 자료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1.7.19 제210차 민주당 의원 총회 모두 발언 및 민주당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민주당의 한·미 FTA 재재협상안(10+2)에 대한 정부 기본 입장과 각 쟁점별 검토 내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 차

I. 민주당의 재재협상안(10+2)에 대한 정부 기본 입장	1
II. 민주당의 재재협상안(10+2)에 대한 검토(요약)	3
III. 재재협상 제기 내용(10개) 상세 검토	8
1. 농·축산업 주요품목(쇠고기) 관세절폐 유예	8
2. 중소기업 보호장치 확보	10
3. 개성공단 제품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조항 도입	12
4.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안전성 확보	14
5. 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폐지	15
6.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	17
7.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강화	20
8.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	21
9. 서비스 시장 개방 방식 전환	24
10. 역진불가(ratchet) 조항 폐기	25
IV. 국내 보완대책 요구 사항(2개) 상세 검토	26
1. 통상절차법 제정	26
2.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27

I **민주당의 재재협상안(10+2)에 대한 정부 기본 입장**

□ 한·미 FTA는 지난 정부부터 추진해온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정

- 2006년 지난 정부는 우리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한·미 FTA 협상을 개시, 타결하였고 이를 성공적인 협상으로 평가하였음.
- ‘개방형 통상국가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 추진은 꼭 필요한 정책적 선택임.

□ 한·미 FTA 추가협상은 3년 반 동안 빈사상태에 있었던 한·미 FTA를 희생시켰고, 전반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확보

- 작년말 추가협상에서 우리 대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자동차 분야에서 미측 우려를 일부 반영하고, 양돈업계와 중소 제약업계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음.
- 한·미 FTA 경제적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 경제에 플러스가 됨.
 - 정부는 2007년 제출한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보정하여 국회에 제출 예정임.

□ 재재협상 요구(10개)는 비현실적으로, 이는 한·미 FTA 폐기와 동일한 주장

- 양국내 비준절차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재협상 요구는 한·미 FTA의 발효시기만 지연시켜 결국 한·미 FTA를 폐기 하자는 주장으로 보임.
 - 또한, 재재협상 요구내용들은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내용으로서(10개중 9개) 이를 이제 와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판단됨.

- 재재협상 요구 사항들도 무역자유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또는 현행 국내법과 동일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내용상 재협상이 필요없음.
- 또한 재재협상 요구 중 상당수는 우리의 기존 개방정책에 따라 우리가 WTO나 다른 FTA에서 이미 약속한 것들로서 한·미 FTA만 수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국제 사회에서 확립된 우리 신뢰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 국내 보완대책(2개)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도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

- 한·미 FTA와 별개인 통상절차법 제정과 관련, 법제정 없이도 對국회 및 對국민 협의·의견수렴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문제는 여·야·정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함.

□ 한·미 FTA 비준은 국회에서 건설적인 논의후, 조속 처리 필요

- 한·미 FTA가 우리 국익에 기여하는지 따져 보고, 피해예상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완대책을 내실화하기 위한 생산적 논의가 필요함(국회 상임위 및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은 우리 국민의 다수가 희망하는 사항이므로, 정치권에서 이러한 우리 국민 여론을 존중하기를 기대함.
- 조속한 시일내 상임위 상정, 의결 및 조기 발효를 위한 조치 필요

II 민주당의 재재협상안(10+2)에 대한 검토(요약)

1 10개 재재협상 요구사항

① 쇠고기 관세철폐 유예

- 한미간 교역규모가 큰 쇠고기 양허 일정 조정 요구시 여타 주요 상품 양허일정 조정과 연계되어 상품분야의 전반적인 재협상으로 확산이 불가피함.
- 한우와 수입 쇠고기 가격차를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 관세 양허 일정을 재조정하더라도 반사이익은 호주산 등 여타 수입 쇠고기에 돌아갈 것임.

② 중소기업 보호장치 확보 문제

-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유통법/상생법은 한·미 FTA만 수정하여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관련 분야는 우리 정부의 기존 개방정책에 따라 WTO 서비스 협정(GATS)과 여타 FTA에서 이전부터 개방함.
- 동 분야에서의 한·미 FTA 관련 양허는 16년전에 발효된 WTO 서비스 협정(GATS)의 우리 양허표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한·미 FTA 협정 불합치 문제 이전에 WTO 불합치 문제가 발생하므로 수정에 실익이 없음.
- 동 사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전통 소상공인 보호 차원과 함께 우리 산업 발전에 관한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존에 약속한 국제 의무에 대한 불합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

③ 개성공단 제품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조항 도입

- 한·미 FTA는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역외가공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문제에 관해 협정 발효후 양국간 논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하였음.
-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이에 따른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재재협상을 통한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강화 시도는 현실성이 없음.

④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안전성 확보

- 한·미 FTA에는 학교 급식용 식자재 구매시 우리 농산물의 우선 구매가 가능하도록 학교급식 분야를 우리 정부조달 의무의 예외사항으로 명백히 규정하였으므로, 한·미 FTA 내용과 무관하게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시행 가능함.
- 한·미 FTA 정부조달 의무는 양허표에 기재된 기관의 조달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의무 면제를 위해 양허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교육청 등)을 굳이 양허기관으로 기재하고, 이를 다시 정부조달의 예외로 하는 특칙 규정을 넣을 이유와 실익이 전혀 없음.

⑤ 의약품 분야 허가·특허 연계제도 폐지

-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권자 및 복제약 제조업자의 이해를 절충한 제도로써, 합리적으로 운영될 경우, 특허 보호와 복제약의 조기 활용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임.
- 정부는 추가협상으로 확보한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것임.

-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 특허 신약 출시를 위한 연구 개발을 장려하는 한편, 동 제도하에서도 특허권 보호 강화에 상응하는 제네릭 의약품체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제반 방안 마련을 다각도로 추진중임.

6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

- 한·미 FTA에서 규정된 금융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은 현행 국내법(외국환관리법)과 IMF협정상 의무와 사실상 동일하며, 한·미 FTA가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임(반면, 미국은 금융 세이프가드 발동 불가).
- 국내 금융시장은 1996년 OECD 가입,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대부분 개방되었고 그에 따라 관련 국내법도 이미 정비되어 있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한·미 FTA 협정의 추가 개방은 제한적임. 또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의 상황 대처를 위해 금융 건전성 정책을 도입하거나 강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

7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강화

-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상호 적용되므로 우리도 발동 가능함. 또한 세이프가드의 내용이 한·EU FTA와 동일함.
- 우리 자동차의 미국내 현지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수입 급증에 따른 미국의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은 낮음.
- 반면, 대미 수출이 증가추세에 있는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 세이프가드 대상이 아님.

Ⅷ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폐기

- 한·미 FTA에서 도입된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체결한 85개의 투자보장 협정을 포함한 투자관련 국제협정에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제도이며, 한·미 FTA상 ISD는 우리가 기체결한 FTA나 투자협정에 포함된 내용과 다르지 않음.
- ISD 조항은 외국 투자자의 국내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유용함.
 - 2006년 이후부터 한국의 대미 투자규모(203억불, 2006-2010년 누계)는 미국의 대한투자(88억불)를 상회하며 대미 진출 우리기업의 보호 장치로서 역할

Ⅸ 서비스 시장개방 방식 전환(네거티브→포지티브)

- 네거티브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개방내용이나 수준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개방방식 전환을 논의할 실익 없음.
 - 한·미 FTA 서비스 시장개방 수준은 포지티브 방식을 취한 한·EU FTA와 동일
- 한·미 FTA에서는 공익성이 높은 분야와 향후 정부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 서비스 분야를 개방대상에서 포괄 유보하여 정부 규제 권한을 계속 보유하고 있음.

Ⅹ 역진불가(ratchet) 조항 폐기

- 자유화 후퇴방지 조항(ratchet)은 적용대상이 모든 분야가 아니라 서비스·투자 분야의 '현재유보'만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범위가 제한적임.
- 공공서비스를 포함하여 향후 경제정책 운용과정에서 규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우리가 포괄 유보하였으므로 우리의 정당한 정책적 필요에 의한 규제는 언제든지 가능함.

2 2개 국내 보완대책 요구사항

① 통상 절차법 제정

- 정부는 통상협상에 관하여 對국회 보고·협의 강화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對국민 의견수렴 강화에 공감하고 있음.
- 다만, 이것은 통상절차법 제정 없이도 가능한 바, 향후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정부·국회간 협의 가능

②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 우리 정부의 해외 시장 확보 및 우리 경제 구조 선진화를 위한 개방정책의 기조와 피해 기업 지원의 효율성간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운영되기를 기대함.

III 재재협상 제기 내용(10개) 상세 검토

1 농·축산업 주요품목(쇠고기) 관세철폐 유예

(민주당측 요구)

- 현재 15년+ 농업세이프가드로 합의된 쇠고기 관세를 10년간 유예하고 11년 차부터 8%씩 철폐하여 15년차에 40%관세를 모두 철폐
- 2010년말 재재협상 당시 미측에 자동차 관세를 유예한 것과 같이 우리 쇠고기에 대한 관세유예도 필요

□ 한미간 교역규모가 큰 쇠고기 양허 일정 조정 요구시 미측은 여타 주요 상품의 양허 일정 조정을 요구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상품분야의 전반적인 재협상으로 확산이 불가피함.

- 쇠고기 수입(4.2억불, 2010년)은 대미 농산물(59.2억불, 2010년) 전체수입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료에 이어 2대 대미 수입 농산물

□ 한우와 수입 쇠고기 가격차를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 관세 양허 일정을 재조정하더라도 반사이익은 호주산 등 여타 수입 쇠고기에 돌아갈 것임.

※ 쇠고기 수입시장 점유율(2010년) : (1위) 호주 49.7%, (2위) 미국 37.0%, (3위) 뉴질랜드 12.6%

- 한우는 고가·고품질로 인식되어 수입 쇠고기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는 호주산 쇠고기 등 여타 수입 쇠고기와 더 깊은 경쟁관계에 있음.

□ 또한, 현재 국내 쇠고기 총 소비량 약 43만톤(2010년) 중 약 56%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참고

미국산 쇠고기 관련 통계

□ 쇠고기 소비자 가격

(원/500g, 볼고기)

	2007	2008	2009	2010
한 우	17,875	16,484	17,054	20,326
미국산	-	-	-	8,566
호주산	6,705	7,512	7,230	7,367

* 농수산물유통공사 가격정보(전국, 연평균)

□ 쇠고기 수급현황

구분	국내수요 (만톤)	공급 (만톤)	공급		1인당 소비량(kg)	자급율(%)
			국내생산	수입		
2006	33.1	30.8	15.8	17.9	6.8	47.8
2007	36.9	37.4	17.1	20.3	7.6	46.4
2008	36.5	39.8	17.4	22.4	7.5	47.6
2009	39.6	39.6	19.8	19.8	8.1	50.0
2010	43.4	43.4	18.9	24.5	8.9	43.5

*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e-나라지표 「농축산물 생산 및 소비 추이」

* 수입은 검역기준

□ 쇠고기 수입현황

(톤, 검역기준, ()안은 점유율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체	142,591	179,405	202,785	224,147	197,856	245,086
미 국	-	-	14,616 (7.2)	53,293 (23.8)	49,973 (25.3)	90,569 (37.0)
호 주	101,363 (71.1)	137,006 (76.4)	147,376 (72.7)	130,429 (58.2)	116,714 (59.0)	121,790 (49.7)
뉴질랜드	39,001 (27.4)	39,570 (22.0)	38,244 (18.9)	37,385 (16.7)	30,162 (15.2)	30,947 (12.6)
멕시코 등	2,227 (1.5)	2,829 (1.6)	2,549 (1.2)	3,040 (1.3)	1,007 (0.5)	1,780 (0.7)

2 중소기업 보호장치 확보

(민주당측 요구)

-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은 한·미 FTA의 투자자 보호 조항과 충돌하여 무력화될 가능성 존재
- 유통법, 상생법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현재·미래유보에 중소기업 보호의무와 관련한 법안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유통법/상생법은 한·미 FTA만 수정하여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관련 분야는 우리 정부의 기존 개방정책에 따라 WTO 서비스 협정(GATS)과 여타 FTA에서 이전부터 개방함.
 - 동 분야에서의 한·미 FTA 관련 양허는 16년 전에 발효된 WTO 서비스협정(GATS, 1995.1.1 발효)의 우리 양허표에 기초하고 있으며, 한·미 FTA 협정 불합치 문제 이전에 WTO 불합치 문제가 발생하므로 수정에 실익이 없음.
 - 동 사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전통 소상공인 보호 차원과 함께 우리 산업 발전에 관한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존에 약속한 국제 의무에 대한 불합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우리나라가 WTO 서비스 협정(GATS) 및 여타 FTA에서 이미 양허한 서비스 분야가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시장접근 제한 조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최근 국회에 발의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대기업으로 하여금 특정업종을 중소기업에 정부 명령에 따라 이양토록 할 때 손실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용에 따른 보상의 일반 원칙(신속·적절·효과적 보상)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유통법·상생법) 한·미 FTA 서비스 양허와의 불합치 문제가 제기되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관련 조항은 WTO 서비스협정(GATS) 및 여타 FTA의 서비스 양허와도 불합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함.
-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추진해온 개방을 통한 유통산업 정책 방향에 따라 WTO 서비스 협정에서부터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 조치권을 유보하지 않았음.
- 따라서, 사업조정제도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대형마트 등에 대한 과도한 진입규제로 작용하여 WTO GATS 시장접근 의무(제16조 제2항) 위배 소지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운용해가는 것이 중요

3 개성공단 제품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조항 도입

(민주당측 요구)

○ 한·미 FTA에서도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페루 FTA와 같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조항 도입이 필요함.

□ 한·미 FTA는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역외가공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문제에 관해 협정 발효 후 양국간 논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하였음.

※ 협정문상 세부 절차 (부속서 22-나)

△ 위원회 설치, △ 한반도 상황 검토, △ 역외가공지역의 지리적 구역 확인, △ 역외가공지역 관련 기준(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 등 기준) 설정 및 충족 여부 결정, △ 원산지 기준 설정 등

□ 미 의회 일각에서는 현재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가능성을 열어둔 현행 협정문 규정에 대해서조차 반대하고 있는 사정임을 감안, 협정 발효후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미측과 기합의된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절차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

○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이에 따른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재재협상을 통한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강화 시도는 현실성이 없음.

□ 2011.4월 백악관이 발표한 대북한 제재 관련 행정명령은 미국이 북한 물자의 미국내 수입을 금지해 오던 기존 조치를 행정명령 형태로 재확인한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님.

○ 따라서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미국내 수출과 FTA 혜택여부는 양측이 동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양국내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구체화 될 것임.

참고**개성공단 최근 현황****□ 입주기업 및 생산액 현황** (통일부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자료, 2010년 말 기준)

- 122개 입주기업이 가동 중이며 총생산액은 3.2억불
(단위: 개, 만불)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가동기업수	18	30	65	93	117	122
생산액	1,491	7,373	18,478	25,142	25,647	32,332

- 업종별로는 ①섬유·가죽·신발, ②기계금속, ③전기전자 순임

업종	섬유·가죽·신발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	기타	전체
기업수 (개)	71 (58.2%)	23 (18.8%)	13 (10.7%)	9 (7.4%)	6 (4.9%)	122 (100%)
생산액 (백만불)	179.2 (55.4%)	48.6 (15%)	59.1 (18.3%)	32.1 (10%)	4.2 (1.3%)	323.3 (100%)

-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매 현황

- 개성공단 관련 남북간 교역이 14억불로서 총 남북교역의 75% 차지
- 개성공단 제품은 모두 남한으로 반입되어, 내수 89%, 수출 11%

※ 개성공단 업체대상 수출실적 조사결과, 2008~2010년간 9,840만불 수출

□ 생산 근로자 현황: 4.7만명 근무중 (북측 4.6만명, 남측 804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북측근로자	6,013	11,160	22,538	38,931	42,561	46,284
남측근로자	507	791	785	1,055	935	804
합계	6,520	11,951	23,323	39,986	43,496	47,088

4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안전성 확보

(민주당측 요구)

- 제17장(정부조달) 유보목록의 급식 프로그램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을 조달대상으로 본다는 조항을 기재해야 함.
- 현재 서울시나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은 제17장의 정부조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

□ 한·미 FTA에는 학교 급식용 식자재 구매시 우리 농산물의 우선 구매가 가능하도록 학교급식 분야를 우리 정부 조달 의무의 예외 사항으로 명백히 규정하였으므로, 한·미 FTA 내용과 무관하게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시행 가능함.

* 부속서 17-A, Section E, Schedules of Korea 일반주석 1: "This Chapter does not apply to procurement in furtherance of human feeding program."(이 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한·미 FTA하의 정부조달상 의무는 양허표에 기재된 기관의 조달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임.

○ 따라서 정부조달 관련 의무 면제를 위해 양허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교육청 등)을 굳이 양허기관으로 기재하고, 이를 다시 정부조달의 예외로 하는 특칙 규정을 넣을 이유와 실익이 없음(민주당측 주장은 협정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

- 정부조달은 GATT 규정(제3조 제8항)에 따라 그 자체로서 내국민 대우 의무의 예외가 되므로 FTA 정부조달 규정의 양허기관이 아닌 한, 학교급식상 우리 농산물 구매는 언제든지 가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허기관이 아닌 교육청을 학교급식 관련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양허기관으로 추가 등재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의 여타 정부조달 행위에 대해 불필요하게 협정상의 의무적용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임.

5 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폐지

(민주당측 요구)

-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값싼 복제(제네릭) 의약품 생산·판매가 어려워지므로 협정문에서 허가·특허 연계제도 부분을 삭제(혹은 협정문 제18.9조제5항을 의무조항(shall)에서 임의조항(may)으로 변경)하고, 입법예고 완료한 약사법 개정안 철회
-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므로 이 조항은 폐지되어야 함.

- 복제 의약품에 대한 시판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권자 및 복제약 제조업자의 이해를 절충한 제도로써, 합리적으로 운영될 경우, 특허 보호와 복제약의 조기 활용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임.
-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업계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해 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업체의 신약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EU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자료보호기간을 신약 출시 후 10년으로 규정(우리는 시판허가일로부터 6년)하여 원천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임상실험 결과 등 자료를 이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 다만, 허가·특허 연계 제도로 인한 국내 제약업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0년 추가협상으로 확보한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것임.
 - 국내 특허 신약 출시를 위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 업계의 신약개발역량 강화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임.

- 2007년 마련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08년부터 10년간 1조원 지원)」을 시행중이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법」을 제정(2011.3.4 국회통과, 2011. 3.30 공포)하여 시행 예정(2012.3.31)
- 유예기간동안 정부는 다양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신약의 특허권을 보호하는 한편, 제네릭 의약품체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여 국내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허가·특허연계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복제 의약품 업체가 특허도전 성공 시 일정기간 동안 시장독점권을 부여할 계획
 -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주요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에버그린 특허전략(후속특허 등재를 통한 특허보호기간 연장)을 방지하기 위해 등재된 특허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의약품 시판 허가와 무관한 특허는 특허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
 - 또한 복제의약품 출시 지연을 막기 위해 복제의약품의 보험등재 절차기간을 단축시켜왔으며 향후에도 계속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

6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

(민주당측 요구)

- 사실상 외환시장을 완전 개방한 우리 금융부분의 취약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맞게 발동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발동요건이 너무 엄격하므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

□ 국내 금융시장은 1996년 OECD 가입,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대부분 개방되었고, 그에 따라 관련 국내법도 이미 정비되어 있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한·미 FTA 협정의 추가 개방은 제한적*임.

* (예시)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공급이 허용되었지만, 미국 보험중개업자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한국 보험업법상의 보험중개업 등록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

□ 외국 자본 유출입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국내적으로 많은 대책이 강구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경험을 한·미 FTA 협상시 다각도로 반영하였음.

- 그 결과, 우리 법령에 기초한 금융 세이프가드 조치 포함을 관철시켰고 협정문상 다양한 유보조항과 건전성 예외조항을 포함하여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

□ 한·미 FTA에서 규정된 금융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은 현행 국내법(외국환거래법 제6조)과 IMF 협정 및 WTO 서비스 협정(GATS)상의 의무와 사실상 동일하며 한·미 FTA가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임(반면, 미국은 금융 세이프가드 발동 불가).

- 특히, 국내 외국환거래법상 금융 세이프가드는 원칙적으로 6개월, 예외적으로 연장 가능하지만, 한·미 FTA에서는 원칙적으로 1년, 예외적으로 연장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보다 발동기한이 더 장기임.

- 금융 세이프가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송금을 제한하는 것이지,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산을 몰수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며, 외국환거래법에서도 몰수는 조치수단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무역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금융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송금을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경상거래뿐만 아니라 자본거래에 대한 금융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적 없음.
- 한·미 FTA가 금융분야에서 필요한 규제장치를 이미 갖추고 있으므로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의 상황 대처를 위해 G-20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금융 건전성 정책을 도입하거나 강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
 - * G-20 차원에서 논의된 “은행세”를 국내 실정에 맞게 “외환 건전성부담금”으로 도입하여, 금년 8월부터 시행 예정(외국환거래법 개정)

참고

단기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 ① 1년 이내에서만 발동 가능
: 외국환거래법에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로 기간이 제한
- ② 몰수적이지 아니할 것
: 외국환거래법의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들은 외국환거래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제한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아님.
- ③ 이중 또는 다중의 환율을 구성하지 아니할 것
: 외국환거래에는 하나의 환율만 적용되어야지 여러 환율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우리가 준수해야 할 IMF 협정문상의 의무
- ④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려는 외화유출을 통제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방해해서는 안 됨.
: 외국환거래법상 자본유출과 관련한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는 외국환이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내에서 원화 자산에 투자해 시장수익률을 획득하는 활동(예: 은행예금, 주식시장 투자)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
※ 다만, 핫머니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단기 세이프가드조치(예 : 외화가변 예치의무제)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서와 같이 강제로 중앙은행예치 및 무이자 지급제한이 가능함
- ⑤ 상업적·경제적·금융상 이익에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
: 이는 원칙적인 요건으로, GATS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싱가포르·인도·EU와의 FTA 등 우리의 기체결 FTA에도 동 요건이 포함
- ⑥ 일시적이며, 그러한 조치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
: GATS 제12조 및 우리 외국환거래법 상 요건
※ 외국환거래법에서는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동 조치를 발동할 수 있으며,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
- ⑦ 내국민대우(NTI), 최혜국대우(MFN), 기재부 또는 한국은행의 공표 의무
: 내·외국인(NTI), 국가별(MFN)로 자본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

7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강화

(민주당측 요구)

- 재협상(2010.12.3) 결과 미측에 전례 없는 자동차 세이프가드 제도 부여
- 발동 요건을 엄격화해 미측이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필요

□ 한·미 FTA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상호 적용되므로 우리도 발동 가능함.

-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문서에서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우리나라가 미측에만 일방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 상호 적용되는 형태로 규정
-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도 한·EU FTA의 일반세이프가드 발동요건과 동일함.

□ 한·미 FTA 자동차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수입급증으로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가 존재해야 하므로 실제 발동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 자동차의 미국내 현지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직접 수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지 않는 추세이므로, 수입 급증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음.

※ 우리 자동차의 현지 생산 증가 추세
: 250,519대(2007) → 237,042대(2008) → 210,566대(2009) → 454,165대(2010)

- 실제로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사례 전무

□ 반면, 작년 대미 직접 수출액이 41억불 기록하면서 대미 수출 증가 추세에 있는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 세이프가드 대상이 아님.

※ 대미자동차부품 수출 (괄호는 자동차분야 수출액중 자동차부품 비중)
: 25.9억불(22.8%) (2006) → 27.0억불(26.8%) (2008) → 41.2억불(37.9%) (2010)

- 자동차 부품은 협정 발효시 미국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므로, 관세감축의 혜택은 누리면서 동시에 세이프가드 걱정은 불요

8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폐기

(민주당측 요구)

- ISD는 정부의 공공정책 수행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국회의 입법권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폐기하거나 실질적으로 무효화
- 또한, 최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 업종·품목 지정도 국내시장 진출을 노리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에는 한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되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ISD)을 제기할 수 있음.
- 협정문 제11장 2절(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은 모두 삭제하고, 제11장의 의무를 어느 한 당사국이 위반한 경우에는 제22장 2절의 분쟁해결절차(당사국간 분쟁해결절차)를 적용

-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는 외국인 투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이며, 우리의 정당한 공공정책 추진과는 무관하므로 재재협상을 통한 삭제 주장은 수용 불가함.
- ISD는 한·미 FTA에서 도입된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체결한 85개 투자협정을 포함한 투자 관련 국제협정에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제도임.
 - 외국인 투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외국 투자자의 국내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유용함.
 - 우리가 기체결한 FTA나 투자협정에도 ISD조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한·미 FTA상 ISD 조항은 기존의 ISD 조항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음.

- 당사국이 아닌 제3의 재판부를 통해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가 대 국가간 분쟁이 가져오는 정치·외교적 파급 및 비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음.
- 특히, 우리의 해외투자가 외국인 투자유치보다 크며, 미국내 우리 기업의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미국내 우리 기업의 투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
- * 2006년~2010년간 한국의 대미투자(203억불) > 미국의 대한투자(88억불)
- ISD가 우리의 정당한 공공정책 추진에 문제를 가져오고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정부의 정당한 정책과 규제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원칙이며,
 - 우리 국내법규상 보건, 환경, 미풍양속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들을 모두 개별적인 유보(도박서비스,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서비스 유보 등)하여 외국인투자가 보건, 환경 등 관련 문제를 초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
 - 또한, 한·미 FTA에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부속서 11-나 제3항 나목).
-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에 따라 우리 대기업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가 ISD 중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구체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투자보장협정 및 FTA 투자챕터는 통상적으로 수용이 공공목적을 위해 비차별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신속·적절·효과적 보상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안 상,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대기업이 기존 사업을 정부 명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이양해야 하는 경우는 간접수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실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수용에 따른 보상의 일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다만, 간접수용은 경제적 효과, 정부 조치의 성격, 합리적 기대이익 침해여부 등을 고려하여 ISD 제소 가능성을 판단하므로 동 법안에 대한 투자협정 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미 FTA 제11.17조의 중재 동의 규정은 투자협정체결의 핵심적 규정으로서 중재관할에 대한 피청구국의 사전적·일반적 동의를 명확히 한 것으로 최근 FTA의 투자협정이나 투자보장협정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

- 이를 당사국 재량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중재절차가 시작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ISD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하는 것임.

- 이러한 사전동의 규정은 투자유치국의 중재판정에 대한 임의적 거부를 방지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기체결 FTA나 양자투자협정(BIT) 등에서 규정하고 있어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규정임.

9 서비스 시장 개방 방식 전환

(민주당측 요구)

○ 서비스시장 개방의 negative list 방식을 positive list 방식으로의 전환 요구 (WTO 방식)

- 서비스 분야의 개방 방식 보다는 개방의 범위와 수준이 중요하며, 한·미 FTA의 네거티브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개방 내용이나 수준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개방방식 전환을 논의할 실익 없음.
 - 예컨대, 개방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한·미 FTA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은 포지티브 방식을 취한 한·EU FTA와 사실상 동일
 - * 한·EFTA FTA, 한·EU FTA에서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했으나, 이는 여러 나라가 함께 협상을 하는 유럽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한 결과
 -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한·칠레, 한·싱가폴 FTA에서도 이미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한 바 있으며, 한·일 투자 협정에서도 마찬가지임.
- 한·미 FTA에서는 공공성이 높은 분야와 향후 정부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 서비스 분야를 개방대상에서 포괄 유보하여 정부 규제 권한을 계속 보유하고 있음.
 - 방송 등 시청각분야, 전기·가스·환경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 교육·보건·사회서비스 등 44개 분야에 대한 미래유보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기초생활과 경제·사회 기본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효 후에도 정당한 목적의 정부규제가 언제든지 가능

10 역진불가(ratchet) 조항 폐기

(민주당측 요구)

○ Ratchet 조항은 한국경제의 여건에 맞는 개방과 규제의 자율적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기해야 함.

□ 자유화 후퇴방지 조항(ratchet)은 적용대상이 모든 분야가 아니라, 서비스·투자 분야의 '현재유보'만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범위가 제한적임.

○ 자유화 후퇴방지 조항은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점진적 자유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공공 서비스를 포함하여 향후 경제정책 운용과정에서 규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우리가 포괄 유보하였으므로 우리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규제는 언제든지 가능함.

※ 방송 등 시청각분야, 전기·가스·환경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 교육(성인교육 및 고등 교육 일부 제외)·보건·사회서비스 등 44개 분야에 대한 미래유보를 유지

□ 우려의 대상인 쌀 등 농산품 개방 문제는 상품양허 이슈이고 쇠고기 문제도 위생·검역의 문제로 이 조항과 상관이 없고,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공서비스 등은 "미래유보"에 이미 기재되어 추후 정책필요에 따라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음.

□ 따라서, 동 조항이 우리경제의 여건에 맞는 개방과 규제의 자율적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침소봉대임.

○ 동 조항은 시장개방 및 투자자·무역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증대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FTA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에서 이미 채택되었던 제도임.

IV 국내 보완대책 요구 사항(2개) 상세 검토

1 통상절차법 제정

(민주당측 요구)

- 국민과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협상과정에 반영하고 국익 극대화 필요
 - 국회에서 통상협상 및 보완대책 수립과정에 참여하는 통상절차법 제정

- 정부는 통상협상에 관하여 對국회 보고·협의를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對국민 의견수렴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음.
 - 다만, 통상협상의 민감성 및 통상협상 전략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보완되어야 내실있는 對국회 보고·협약이 실질적으로 가능

- 통상협상 관련 對국회 보고·협약 등의 강화방안은 통상절차법 제정 없이도 현행 법령*을 통해 실현 가능한 바, 향후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정부·국회간 협의 가능
 - * 헌법,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FTA체결절차규정 등
 - 향후 바람직한 관행정책 방안에 대해, 정부·국회간 협의를 추진하는 것은 검토해 볼 만함.
 -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 수준의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및 관행정책 필요(필요시, 관련 법령 개정)

- 현재 외통위에 계류중인 의원발의된 법안(6건)* 제안내용의 편차가 심하고, 헌법상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포함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하고는 헌법상 통상협상 권한이 행정부에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
 - * 김종률의원안(08.6.30), 이정희의원안(08.7.23), 송영길의원안(08.9.16), 천정배의원안(08.12.4), 이영애의원안(10.2.11), 박선영의원안(10.12.21)

2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민주당측 요구)

○ FTA로 피해 보는 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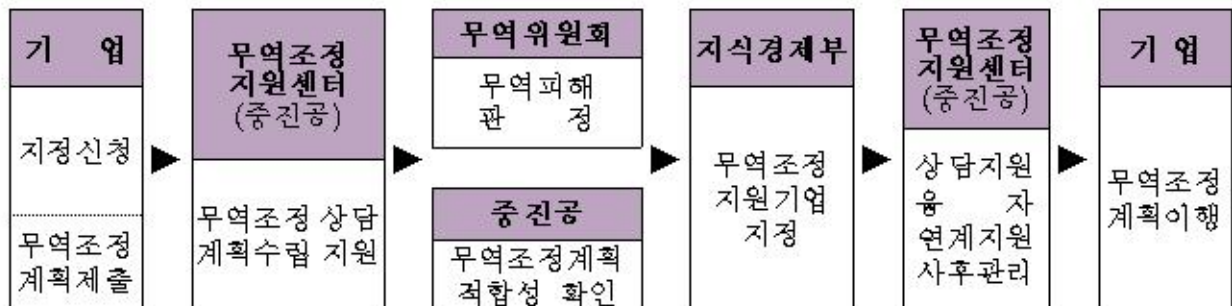
- 우리 정부의 해외시장 확보 및 우리 경제 구조 선진화를 위한 개방 정책의 기조와 피해 기업 지원의 효율성간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참 고

무역조정지원제도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쟁력 회복, 생산성 향상, 구조조정을 위한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함.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년도 대비 25% 이상 감소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요건으로 함.
 - ※ (융자지원) 기업당 30억원 한도, 변동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0.6%차감)
 - ※ (상담지원) 무역조정전략(사업전환, 구조개편 등), 경영기술개선 및 경영혁신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정부지원비율 80%내 기업당 2,400만원 한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



- 기업 지원효과 확대를 위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피해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 25%이상 감소”에서 “20%이상 감소”로 완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중(현재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완료 후 법제처 심사 중)
- 상담지원 대상기업을 무역조정지원 지정·신청 기업 이외로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중(현재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중 (7.5~7.25))
 - 상담지원을 받기위한 피해기준 및 절차를 완화(현재는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받아야 가능)하여 피해초기에 지원

☐